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15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박성민·강승규·정동만

김위상 · 서일준 · 강민국

최보윤 · 정희용 · 구자근

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의와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나 부정한 활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3제2항).
- 나.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 승인받은 사항을 설치 완료시 제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를 하 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위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이를 2명 이상에게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52조제3항제2호 신설).
- 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 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의4제6항 및 제52조제3항제3호 신설).
- 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입주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등의 거부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4제7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신설).
- 바.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5조제1항제2호).
- 사.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조업 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6항 신설 및 제55조제1항제3호).
- 아.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7항 및 제5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 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입주현황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제4항 신설).
- 차.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입주계약 체결 또는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8조의7제3항 신설).
- 카.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양도·임대를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의7제4항 및 제53조제3호의2신설).
- 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사업자등록 및 휴업·폐업에 관한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14조의3제2항 중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제3항에"를 "제28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제38조제3항에"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를 "입주기업체는"으로, "관리기관에"를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8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 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관리기관. 이 경우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이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라 한다)"로한다.

제28조의4의 제목 중 "분양"을 "분양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분양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분양받은 자는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사용승인 전까지 이를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분양 대상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나 입주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8조의5의 제목 중 "입주"를 "입주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그 입주에 관한 승인(이하 "입주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장· 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전에 당사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 ⑦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임대하려는 자(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 다)에게 입주현황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워부렁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하여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하여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④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단지의"를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밖의 지식센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관리기관은"을 "관리기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내"를 "또는지식산업센터 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매매 등에 관한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 중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 산업센터를 분양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
- 2. 제2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전매한 자
- 3. 제28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한 자

제5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8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 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8조의4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보고·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 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3. 제28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한자
- 3의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하고 사업개 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 6의2. 제28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의5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양도 또는 임대받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지식산업센터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u>은 경우</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입주계약을 체결한</u> 경우에는	<u>해당하는</u>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u> <신 설></u>	 제28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
	<u>승인을 받은 경우</u>
<u><신 설></u>	2.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
	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u>공</u> <u>장설립등의 승인을</u> 받은 <u>자</u>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 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 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작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

드) ①
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자를 포함한다)
<u>.</u>
② 제28조의5제4항에 따라 준
용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제38
조제3항에
입주기업체
<u> </u>
 <u>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의</u>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③ ④ (생 략)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생략)
 -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28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 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 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 기업체: 관리기관. 이 경우 기 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 신고 를 하여야 한다.
- ③ ④ (현행과 같음)
-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산업센터의 설	[립승인을
받은 자(이하 "지식신	업센터를
<u>설립한 자"라 한다)</u>	

③ ~ ⑥ (생 략)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하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분양면적의 합계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 식산업센터에서 제28조의5제1 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분 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 한 때부터 사용승인 전까지 이 를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 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⑥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분양 대 상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 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독을

<u><신 설></u>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 주) ① · ② (생 략)

<신 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 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지 도 ·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식 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나 입주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 입하여 장부 · 대장, 그 밖의 서 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주 및 승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 설(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 터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제조업을 영 위하기 위한 시설에 입주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그 입주에 관한 승인 (이하 "입주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신 설>

<신 설>

<신 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제조업 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나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 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신 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u>관리</u>)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 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u><신 설></u>

<u>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제1호</u>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임대하려는 자(제28조 의4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를 설립한 자가 임대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u>관리</u> <u>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입주현황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u>⑤</u> 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제4 항에 따른 확인·점검의 방법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신 설>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1.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하여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하여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④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 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 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ㆍ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제51조의3(휴업·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u>내</u>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제52조(벌칙) ①・② (생 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1조의3(휴업·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① 산업단지 및 지식 산업센터(산업단지 밖의 지식 센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관리기관이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u>또는 지식산업센터 내</u>-----

_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 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매매 등에 관한 거래자료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 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 설>

Ò	1	
$\overline{\Box}$	ú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 터를 분양한 자
- 2. 제2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를 전 매한 자
- 3. 제28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한 자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8조의7제4항을 위반하 여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 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4.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u><신</u> 설>

<u>1.</u> ~ <u>6.</u>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 1. 제28조의4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보고·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사항을 변경한 자
- 3. 제28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한 자
- 4. ~ <u>9.</u>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2)	 	 	 	 	 		 -	-
	 	 	 	 	 	-	 -	_

1. ~ 3. (생 략) <u><신 설></u>

4. <u>제15조제2항</u>에 따른 기준건 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 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5.·6. (생략) <u><신설></u>

7. ~ 11. (생 략)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하고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4. 제15조제2항제2호
<u></u>
_
5.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8조의5제7항을 위반하
<u>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u>
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
식산업센터를 양도하거나 임
대한 자
7. ~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